

#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28호
2. 제 출 자 : 허기회 의원
3. 제출일자 : 2017. 11. 6.
4. 회부일자 : 2017. 11. 7.

### II . 제안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장이 표창하는 체육대회의 범위는 조례를 통해 그 종류를 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감과 교육장 주관 체육대회의 종류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서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표창의 대상이 되는 체육대회가 시대적 ·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원인으로, 이로 인해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빈번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체육대회의 범위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고자 함.

### Ⅲ. 주요내용

- 가. 체육대회의 종류 중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의 종류에 개별 단일 종목을 나열하지 아니하고, 교육감과 교육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로 단일화함(안 별표).

###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2. 예산조치 :

-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3. 기 타 :

- 입법예고(2017. 11. 10. ~ 11. 17.) 결과 :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6일 허가회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28호로 제출되어 2017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장이 표창하는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의 범위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육대회의 종류는 크게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 ‘전국학생 체육대회’, ‘국제 경기대회’로,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 주관”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에는 사격대회 등 9개의 개별종목<sup>1)</sup>과 전국체육대회를 겸한 소년체육대회 선발전 및 학교간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는 다양한 표창을 수여 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장 주관”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수영대회, 육상대회, 체조대회 등 3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만 표창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감 주관” 대회의 경우 실제에 있어서는 9개의 개별종목 중 인라인롤러경기대회, 단축마라톤대회, 볼링대회, 스키대회, 스

1)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 중 교육감 주관 체육대회는 사격대회, 수영대회, 인라인롤러경기대회, 단축마라톤대회, 육상경기대회, 체조대회, 볼링대회, 스키대회,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등 9개의 개별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포츠클라이밍대회 등 5개 종목은 지난 3년간 개최조차 되지 않아 표창 시행 종목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교육장 주관” 대회의 경우에는 동 조례에 규정된 3개의 개별종목외에 교육지원청별로 각기 다른 개별종목을 신설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별표 참고).

**【표1】 최근 3년간 교육감 주관 체육대회 표창 현황**

(단위 : 건)

연도	육상대회	수영대회	체조대회	서울소년체육대회	사격대회
2015	470	199	268	1,547	111
2016	475	185	274	1,092	60
2017	460	191	304	1,097	64

- 이와 같이 교육감과 교육장이 주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가 조례 규정 범위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조례에서 개별종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 이런 문제로 인해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에서 개별종목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부분 조례개정이 이루어졌고, 개별종목을 명시한곳은 서울시를 비롯해 5개 교육청에 불과합니다.<sup>2)</sup>,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학생 체육대회의 종류에 개별종목을 명기하지 않고 교육감과 교육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로 단일화한 것은 행정 집행에 있어 적법성을 제고하고 빈번한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개별종목을 명시하지 않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등 5개 교육청에 불과함.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조례 개정예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건강과-19082, 2017. 11. 15.).<sup>3)</sup>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3)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2017.11.14.) 참고.

**【별표】 최근 3년간 교육장 주관 체육대회 표창 현황**

(단위 : 건)

연도	소속청	조례에서 정한 체육대회 개별종목			조례에 없는 체육대회 개별종목												
		육상대회	수영대회	체조대회	바둑대회	북부행복스포츠페스티벌	건강달리기대회	긴줄넘기대회	우리반운동회	여학생스포츠클럽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중등스포츠클럽대회	학교스포츠클럽	저학년점프업스포츠클럽	초등학교저학년축구대회	훈훈한통합스포츠클럽대회	체인지UP우리마을스포츠클럽
2015	동부	129	162	-	-	-	-	-	-	-	-	-	-	-	-	-	-
2016		111	167	-	-	-	-	-	-	-	-	-	-	-	-	-	-
2017		98	161	-	-	-	-	-	-	-	-	-	-	-	-	-	-
2015	서부	331	173	14	35	-	-	-	-	-	-	-	-	-	-	-	56
2016		285	178	-	40	-	20	-	-	-	-	-	-	-	-	-	60
2017		241	177	-	-	-	-	-	-	-	-	-	-	-	-	-	-
2015	남부	313	146	38	-	-	13	-	-	-	-	-	-	-	-	-	-
2016		294	146	-	-	-	7	-	-	-	-	-	-	-	-	-	-
2017		297	159	-	-	-	-	-	-	-	-	-	-	-	-	-	-
2015	북부	277	153	40	-	-	-	-	-	-	-	-	-	-	-	-	-
2016		253	159	18	-	38	-	-	-	-	-	-	-	-	-	-	-
2017		247	151	-	-	-	-	-	-	-	-	-	-	-	-	-	-
2015	중부	222	156	-	-	-	13	-	-	-	-	-	-	-	-	-	-
2016		223	149	-	-	-	-	-	-	-	-	-	-	-	-	-	-
2017		223	153	-	-	-	-	-	-	-	-	-	-	-	-	-	-
2015	강동·송파	222	189	21	-	-	8	51	-	4	35	-	-	-	-	-	-
2016		208	192	21	-	-	-	-	28	4	35	-	-	-	-	-	-
2017		206	185	-	-	-	-	-	-	-	-	-	-	-	-	-	-
2015	강서·양천	294	172	-	-	-	-	-	-	-	40	-	8	-	-	-	-
2016		306	179	-	-	-	-	-	-	-	56	-	8	-	-	-	-
2017		313	177	-	-	-	-	-	-	-	-	-	-	-	-	-	-
2015	강남·서초	205	163	-	-	-	12	-	-	-	-	17	-	-	-	-	-
2016		206	162	-	-	-	12	-	-	-	-	15	-	-	7	-	-
2017		188	158	-	-	-	-	-	-	-	-	17	-	-	17	-	-
2015	동작·관악	174	165	-	-	-	-	-	-	-	-	34	28	-	-	-	-
2016		161	165	-	-	-	-	-	6	-	-	40	24	-	-	-	-
2017		127	162	-	-	-	-	-	-	-	-	29	-	-	-	-	-
2015	성동·광진	301	154	-	-	-	-	-	-	-	-	32	-	-	-	-	-
2016		250	147	-	-	-	-	-	-	-	-	13	-	-	-	-	-
2017		212	154	-	-	-	-	-	-	-	-	12	-	-	-	-	-
2015	성북·강북	193	143	-	-	-	18	-	-	-	-	50	-	-	-	-	-
2016		215	136	-	-	-	-	-	-	-	-	27	-	-	-	-	-
2017		206	174	-	-	-	-	-	-	-	-	16	-	-	-	-	-

# 관계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24호, 2017.3.21., 일부개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